

전기용품기술기준중개정

공업진흥고시 제93-103호

개정 1993. 3. 9

공업진흥청에서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1993년 3월 9일 부터 시행합니다.

전문 제1조 내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제1항에 규정한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별표1 내지 별표11과 부속서로 한다.

제3조(기술기준의 적용) ①기술기준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조에서 정한 전기용품별로 적용한다. 다만 2개이상의 복합 기능을 가진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각각의 전기용품에 해당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②전기용품의 구조·재질 및 시험기관의 시험능력등을 판단하여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업진흥청장이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조(기술기준의 해석) ①이 고시에 의한 기술기준의 해석은 공업진흥청장이 한다.

②제1항의 기술기준의 해석이 필요한자는 서면으로 공업진흥청장에게 해석을 요청 할수 있다.

③공업진흥청장은 기술기준 해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심사위원회에 회부 할수

있다.

제5조(신개발품의 기술기준 적용) ①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한 전기용품으로서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개발제품(규격포함)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2. 국제규격(IEC, ISO등)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규격이거나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기준
-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용한 기술기준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으로 제정된후 기술기준 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동기술기준이 제정된후 3개월 이내에 제조업자는 동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심사를 할수 있다.

별표3 : 배선기구류 기술기준

3. **개폐기**(재봉기용 콘트롤러 및 자동온도조절기를 제외한다.) 및 전자개폐기조작용스위치(이하 이표에서 “개폐기등”이라 한다.)

다. 성능

(15) 단락차단성능

비포장 퓨우즈의 붙임부를 가지는것 및 퓨우즈 이외의 단락보호 장치를 가지고 정격차단전류를 표시하는것에 있어서는 [부표5] 단락차단성능의 시험을 하였을때에 적합할것. 다만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별표8 : 전열기구류, 전동력응용기계기구류, 광원응용기계기구류, 전자응용기계기구류, 기타교류용전기기계기구류 및 휴대발전기 기술기준

1. 공통사항

다. 부품 및 부속품

(14) 컨텐서는 별표3. 배선기구류 기술기준중

1. 공통사항 다. 부품및부속품의 (9)에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9. 전기솔, 전기주전자, 전기우유포트, 전기증기발생기, 전기찜통, 전기냄비, 전기주온기, 전기계란삶기, 전기수염짜기용탕비기, 전기보온밥통, 전기약탕기

(11) 고내 온도상승의 성능(전기오븐에 한한다)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내를 비운상태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연속 통전하여 열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고내 중앙부의 온도가 200℃에 달했을때 까지 소요시간은 20분 이내이고, 그 최고온도는 220℃ 이상일 것.

10. 전기토스타, 전기오븐, 전기생선구이, 전기핫프레이트, 전기후라이팬

(7) 열판의 온도분포시험(전기핫프레이트 및 전기후라이팬에 한한다)

(4) 기준 의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 1. 측정점은 용기의 내측을 측정한다.
2. 열판이 원형인 구조의 것은 원의 지름을 1번으로 하는 사변형을

가상하여 측정점을 결정한다.

3. 중앙부에 기름받이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서 발열체가 하나인것의 중앙부의 온도는 중앙근접부를 측정하고 발열체가 2이상의 것은 발열체의 중심을 중앙부로 하여 각각 측정한다.

22. 전자유도가열식조리기

(6) 열판의 강도

(나)의 말미에 다음표를 추가한다.

[표]

전력소비전력 (W)	낙하체의 질량(kg)	낙하체의 형상
300 이하	0.5	5c 5c ϕ60
330초과 600이하	0.75	
600초과 1200이하	1.0	
1200을 초과하는것	1.5	

28. 전기납땀인두

(4)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4) 과부하성능

(5) 내구성시험

“10,000회”를 “3,000회”로 한다.

64. 전기그라인더, 전기샌더, 전기드릴, 전기대패, 전기톱, 전기포리셔, 전기칼날갈개, 전기드라이버, 기타전동공구

(2) 절연성능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표 4의 (1) 및 (2)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적합할 것

95. 전구식 형광등 기구

(5) 이상온도상승

(나) 기준의 ③을 다음과같이 한다.

③ 자연냉각시킨후 형광램프를 점등할 수 있을것(램프교체가 가능한 구조에 한함)

97의 3. 모니터 (2)구조 (바) 와 116. 프린터 (2) 구조 (바) 및 117. 전동타기 (2)구조 (바) 의 [표] 말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추가 한다.

비고 : 이 표는 코팅한 인쇄배선판에 적용하며, 코팅되지 않은 부분 및 코팅되지 않은 배선판은 별표8. [부표2] 전기면도기등 이외의 것의 공간거리

순화된 행정용어

부득이(不得已)	→ 할수 없이
부상(浮上)하다	→ 떠오르다
부언(附言)하다	→ 덧붙여 말하다
부응(副應)하다	→ 따르다
부의(附議)하다	→ 토의에 부치다
부착(附着)하다	→ 붙이다
분망하다	→ 바쁘다
분할(分割)하다	→ 나누다
불매운동(不買運動)	→ 안사기운동
불문(不問)하고	→ 묻지않고